

2027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지표

2026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7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지표

분야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전국·단일	지도사
	합 계		1,000	1,000
A. 운영 체계 (200)	소 계		200	100
	1. 운영관리	① 운영규정·지침·교육계획 수립·이행	100	100
	2. 인력관리	① 고급인력 확보	100	-
B. 업무 충실성 (600)	소계		600	700
	1. 위험성 평가 (150)	① 위험성평가 실시 지도	50	50
		②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등 지도	100	150
	2. 작업환경 관리 (200)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25	25
		② 유해인자 관리 지도	50	75
		③ 제도이행 관리 지도	50	50
		④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	75	100
	3. 근로자 건강보호 (250)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 지도	50	50
		②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50	50
		③ 뇌심혈관질환 예방 지도	50	50
		④ 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	50	50
		⑤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	50	50
C. 업무 성과 (200)	소계		200	200
	1. 작업환경 개선 등	① 보건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75	75
		② 작업환경개선 실적	75	75
	2. 만족도	① 만족도	50	50
D. 가감점 (±100)	소계		±100	±100
	1. 가점	① 포상, 기관별 우수사례 및 적정 수수료 등	+100	+100
	2. 감점	① K2B 부적정률 및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100	-100

※ 평가대상 기간 내 업무정지 처분(과징금 부과)을 받은 경우, 총점 산정 후 등급보다 한단계 하향 조정

1. 운영관리		① 운영규정·지침·교육계획 수립·이행 (10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필수항목을 모두 만족한 경우		☐	1.0						
필수항목 중 1가지 누락된 경우		☐	0.8						
필수항목 중 2가지 누락된 경우		☐	0.6						
필수항목 중 3가지 누락된 경우		☐	0.4						
필수항목 중 4가지 이상 누락된 경우		☐	0.2						
지표정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운영규정·지침·교육계획의 보유 및 실행 여부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기관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필수사항에 대하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영규정·지침·교육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반영 및 실행 여부를 평가 ☐ 평가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필수항목 (6가지)</th> <th>반영(최신화)여부</th> <th>실행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 운영규정·지침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① 업무 수행 절차 ② 기술지도 수행 표준 매뉴얼 - 보유장비(법정+추가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③ 보유장비의 이력카드 작성 ④ 보유장비별 검·교정 주기 설정 - 기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⑤ 직원 교육·훈련 계획 - 법정, 보수 및 직무능력향상 내부교육 등 포함 ⑥ 기술자료 활용 계획 및 실적 </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필수항목 (6가지)	반영(최신화)여부	실행여부	- 운영규정·지침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① 업무 수행 절차 ② 기술지도 수행 표준 매뉴얼 - 보유장비(법정+추가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③ 보유장비의 이력카드 작성 ④ 보유장비별 검·교정 주기 설정 - 기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⑤ 직원 교육·훈련 계획 - 법정, 보수 및 직무능력향상 내부교육 등 포함 ⑥ 기술자료 활용 계획 및 실적		
필수항목 (6가지)	반영(최신화)여부	실행여부							
- 운영규정·지침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① 업무 수행 절차 ② 기술지도 수행 표준 매뉴얼 - 보유장비(법정+추가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③ 보유장비의 이력카드 작성 ④ 보유장비별 검·교정 주기 설정 - 기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⑤ 직원 교육·훈련 계획 - 법정, 보수 및 직무능력향상 내부교육 등 포함 ⑥ 기술자료 활용 계획 및 실적									
※ 기관의 운영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최하점"으로 평가									
확인사항 ☐ 운영규정(매뉴얼, 지침, 교육·훈련계획) 등 증빙자료									

A

운영체제(200점)

2. 인력관리		① 고급인력 확보 (100점/지도사 평가 제외)									
평가기준		평가결과									
[고급인력 평가기준]에 따른 인력											
지표정의 고급인력 확보를 통해 기술지도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심사원증 학위증, 임금지급대장 4대보험확인서 등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 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 이상(183일) 이상 고용내역이 확인되고 현장 업무 수행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평가 ○ 법정 인력기준 외 기술등급 평가 ☐ 평가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보유인력의 기술등급 (최대 100점)</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① 산업보건 관련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30점×인원수)</td> <td>30점×인원수</td> </tr> <tr> <td>② 산업보건 관련 석사 학위, 산업보건지도사 (20점×인원수)</td> <td>20점×인원수</td> </tr> <tr> <td>③ 경력기준에 따른 배점 부여 (최대 40점) - 산업보건분야 근무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 산업보건분야 근무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td> <td>10점×인원수 20점×인원수</td> </tr> </tbody> </table> ※ 배점은 ① ~ ③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되, 보유인력 1명이 2가지 항목 이상 중복 되는 경우 최고점수 인정				보유인력의 기술등급 (최대 100점)	점수	① 산업보건 관련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30점×인원수)	30점×인원수	② 산업보건 관련 석사 학위, 산업보건지도사 (20점×인원수)	20점×인원수	③ 경력기준에 따른 배점 부여 (최대 40점) - 산업보건분야 근무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 산업보건분야 근무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10점×인원수 20점×인원수
보유인력의 기술등급 (최대 100점)	점수										
① 산업보건 관련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30점×인원수)	30점×인원수										
② 산업보건 관련 석사 학위, 산업보건지도사 (20점×인원수)	20점×인원수										
③ 경력기준에 따른 배점 부여 (최대 40점) - 산업보건분야 근무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 산업보건분야 근무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10점×인원수 20점×인원수										
확인사항 ☐ 관할 고용노동부 신고 지정현황, 자격증, 학위증, 관련 공문, 재직증명서 등											

B

업무 충실성(600점)

1. 위험성 평가

① 위험성평가 실시 지도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모든 필수항목을 적정하게 지도한 경우	☐ 1.0
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1개소인 경우	☐ 0.8
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2개소인 경우	☐ 0.6
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3개소인 경우	☐ 0.4
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4개소 이상인 경우	☐ 0.2

지표정의

사업장 규모·작업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적용 및 확산을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지도 내용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년도 위탁사업장 중 최소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사업장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평가
 - 평가년도 위탁사업장이 5개소 미만의 경우, 필수항목 누락 사업장을 비율로 평가
 - ※ (예시) 평가년도 위탁사업장이 3개소이며, 필수항목 누락 사업장이 2개소인 경우

$$\Rightarrow 2 / 3 \times 100 = 66.6\% \approx 5\text{개소 중 } 3\text{개소인 경우로 "20점" 적용}$$
- 사업장관리카드의 작성 일치 여부 및 내용 누락 여부 확인
- 평가기준에 따라 상태보고서 및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지도 내용을 확인하여 적정한 항목 수를 평가

□ 평가 기준

- 위탁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필수항목별 지도 여부 확인
 - (적정지도 인정) 위탁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 증빙자료 확인 또는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기술지도 내용

구분	필수항목	적정 지도
1	위험성평가 담당자 지정 여부(관리감독자 역할 부여)	
2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이수 및 실시	
3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제시(화학물질 CHARM* 기법, 산업보건위험성평가(OHRA**), 빈도강도법, 저중고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	
4	위험성평가 실시 및 근로자 참여	
5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기록 및 보존	

* Chemical Hazard Risk Management(노출수준 등급 × 유해성 등급 = 위험성 등급) ; MSDS,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결과 기반으로 위험성평가실시 안내

** Occupational Health Risk Assessment : 산업보건 3대분야(관리체계, 작업환경, 건강관리)별 위험요인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분야별 유해·위험요인 도출

★ 산업안전포털 > KRAS(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안내 > 위험성평가 방법 > 산업보건평가

※ 산업보건분야에 대한 위험성평가 적정 지도여부 중심으로 평가(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지도한 내용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음)

확인사항

- 위탁사업장 현황, 사업장관리카드, 상태보고서(5개소),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및 결과 등 증빙자료

B

업무 충실성(600점)

1. 위험성 평가	②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등 지도 (100점/ 지도사 1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모든 사업장을 적정하게 지도한 경우		☐ 1.0															
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1개소인 경우		☐ 0.8															
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2개소인 경우		☐ 0.6															
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3개소인 경우		☐ 0.4															
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4개소 이상인 경우		☐ 0.2															
지표정의																	
위탁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 결정에 대한 적절한 기술지도 여부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년도 위탁사업장 중 최소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사업장관리카드, 상태보고서 및 위험성평가표 확인 <선정 우선 순위> -(1차) 작업환경 고위험 사업장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1/2) 초과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2차) 유해인자별 고위험 사업장 : 관리대상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취급, 분진취급, 근골격계질환 발생, 밀폐공간 보유 - 평가년도 위탁사업장이 5개소 미만의 경우, 필수항목 누락 사업장을 비율로 평가 ※(예시) 평가년도 위탁사업장이 3개소이며, 필수항목 누락 사업장이 2개소인 경우 $\Rightarrow 2 / 3 \times 100 = 66.6\% \approx 5\text{개소 중 } 3\text{개소인 경우로 "40점/지도사 60점" 적용}$ ○ 사업장 특성에 맞는 중점 위험 공정 파악을 통해 현실 적용성을 고려한 위험성 결정 등 적정 지도 여부 평가 ○ 위탁사업장 현장 확인(2개소 이상) 시 근로자 면담을 통해 TBM을 실시하지 않거나, 위험성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점수를 한단계 하향 □ 평가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필수항목</th> <th>적정 지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위험요인 파악</td> <td>1 위험요인(취급물질 등 유해인자)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td> <td></td> </tr> <tr> <td>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조사</td> <td></td> </tr> <tr> <td>3 유해위험요인(취급물질 등 유해인자) 파악</td> <td></td> </tr> <tr> <td rowspan="2">위험성 결정 등</td> <td>4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추정 및 결정 방식 채택</td> <td></td> </tr> <tr> <td>5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여부</td> <td></td> </tr> </tbody> </table> ※ 산업보건분야에 대한 위험성평가 적정 지도여부 중심으로 평가(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지도한 내용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음)			구분	필수항목	적정 지도	위험요인 파악	1 위험요인(취급물질 등 유해인자)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		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조사		3 유해위험요인(취급물질 등 유해인자) 파악		위험성 결정 등	4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추정 및 결정 방식 채택		5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여부	
구분	필수항목	적정 지도															
위험요인 파악	1 위험요인(취급물질 등 유해인자)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																
	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조사																
	3 유해위험요인(취급물질 등 유해인자) 파악																
위험성 결정 등	4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추정 및 결정 방식 채택																
	5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여부																
확인사항																	
□ 위탁사업장 현황, 사업장관리카드, 위험성평가표, 상태보고서(5개소) 등 증빙자료																	

B

업무 충실성(600점)

2. 작업환경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25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모든 사업장을 적정하게 지도한 경우	☐ 1.0
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1개소인 경우	☐ 0.8
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2개소인 경우	☐ 0.6
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3개소인 경우	☐ 0.4
필수항목을 누락한 사업장이 4개소 이상인 경우	☐ 0.2

지표정의

기술지도 시 위탁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반영 지도 여부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년도 위탁사업장 중 최소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사업장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평가
 - 평가년도 위탁사업장이 5개소 미만의 경우, 필수항목 누락 사업장을 비율로 평가
 - ※(예시) 평가년도 위탁사업장이 3개소이며, 필수항목 누락 사업장이 2개소인 경우

$$\Rightarrow 2 / 3 \times 100 = 66.6\% \approx 5\text{개소 중 } 3\text{개소인 경우로 "10점" 적용}$$
- 기술지도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 상태보고서 내용의 적정 지도 여부를 평가
- 필수항목은 기관의 기술지도 및 조언에 대한 사항이 보고서 등 기록물과 현장 등에서 증빙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 인정

□ 평가 기준

필수항목	적정 지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상태보고서에 자필 서명하고 지도사항의 개선결과를 확인하도록 지도	
②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안전보건방침·목표를 게시하도록 지도	
③ 위험성평가의 정기적 실시, 위험요인 개선 및 현장 근로자 참여 지도	
④ 근로자에게 현장의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한 작업방법을 주지하도록 지도	
⑤ 경영책임자가 매년 안전보건활동실적을 검토하고 지속 개선하도록 지도	

※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지도한 내용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음(단, 안전관리전문기관 지도 시 누락사항 및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반영)

확인사항

- 위탁사업장 현황, 사업장관리카드, 상태보고서(5개소) 등 증빙자료, 위탁사업장(2개 이상) 기록물 및 현장 관계자(사업장 안전 업무 담당자 등) 면담

B

업무 충실성(600점)

2. 작업환경 관리

② 유해인자 관리 지도 (50점/지도사: 75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유해인자 관리 지도가 모두 적정한 경우	☐ 1.0
유해인자 관리 지도 적정율이 95% 이상인 경우	☐ 0.8
유해인자 관리 지도 적정율이 90% 이상인 경우	☐ 0.6
유해인자 관리 지도 적정율이 85% 이상인 경우	☐ 0.4
유해인자 관리 지도 적정율이 85% 미만인 경우	☐ 0.2

지표정의

사업장 규모·작업별 특성에 맞는 유해인자 관리 지도의 적정성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년도 위탁사업장 중 최소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사업장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평가
-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적정율 평가),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후 환산점수 부여
- 상태보고서의 유해인자 관리 지도의 적정성 여부 확인
- 기관의 위탁사업장 중 방문 사업장(2개소 이상)을 공단에서 선정

□ 평가 기준

- 상태보고서의 지도내용을 필수항목으로 구분하여 적정지도 여부를 평가(필수항목 이외의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기술적인 대책없이 미흡한 사항만 지적하거나, 기술적 대책제시가 일반적인 내용*이면 미흡으로 분류

* 예) (지적) ○○공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 (대책) ○○공정 국소배기장치 설치

- 다음의 사항 확인 시 1개소당 1단계 하향 평가 (**현장평가 확인사항**)

- ① 위험성 평가결과(B.1.②) 도출된 유해인자 중 기술지도가 필요함에도 누락된 경우
 - ② 법적으로 공학적 대책 수립이 필요*함에도 관리적 사항(교육, 보호구)만 기재된 경우
- * 예) 안전보건규칙 제453조(설비기준 등)제2항에 따른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에 관한 지도
- ③ 필수항목에 대한 지도내용이 허위인 경우

« 적정 이행 판단 기준 »

□ 해당 필수항목에 대한 기술지도의 적정성은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적용

- ① 사업장관리카드에 작업공정별 발생하는 유해·위험인자는 참고자료*를 통해 파악(해당시) 하여야 함
* 참고자료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 등)

- ② 파악된 유해인자(필수항목)에 대한 적정한 기술지도 실시 여부를 평가함

- ③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공정(장소), 위험요소에 대한 현재의 조치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
· (**허용 가능한 범위인 경우**) 현재의 조치사항을 상태보고서에 기록하고 필요시 추가 권고사항 지도

- (**허용 불가능한 범위인 경우**) 현재의 조치에 대한 개선대책을 포함하여 기술지도 필요

* 기술지도 받은 사업장에서 개선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해인자에 대한 공정(장소) * 위험요소 * 개선대책 등 3개 요소가 포함된 기술지도 내용이 상태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어야 함.

□ 평가 산식

$$\text{적정율(\%)} = \frac{\text{적정건수(합계)}}{\text{총건수*(합계)}} \times 100$$

* 선정 사업장 수(5개소) × 필수 항목 수(최대 10건) = 최대 50건(비해당 항목은 산식에서 제외)

구분	필수항목	총건수	적정여부	
			적정	미흡
합 계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4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25.6.1. 개정·시행 내용 포함)			
7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8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9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0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확인사항

□ 위탁사업장 현황, 사업장관리카드, 위험성평가표, 상태보고서(5개소) 등 증빙자료, 위탁 사업장(2개 이상) 기록물 및 현장 확인

B

업무 충실성(600점)

2. 작업환경 관리		③ 제도이행 관리 지도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제도이행 지도가 모두 적정한 경우		☐	1.0																											
제도이행 지도 적정율이 95% 이상인 경우		☐	0.8																											
제도이행 지도 적정율이 90% 이상인 경우		☐	0.6																											
제도이행 지도 적정율이 85% 이상인 경우		☐	0.4																											
제도이행 지도 적정율이 85% 미만인 경우		☐	0.2																											
지표정의																														
사업장 규모·작업별 특성에 맞는 제도이행 관리 지도의 적정성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년도 위탁사업장 중 최소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사업장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평가 -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적정율 평가),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후 환산점수 부여 ○ 상태보고서의 제도이행에 관한 지도의 적정성 여부 확인 ○ 기관의 위탁사업장 중 방문 사업장(2개소 이상)을 공단에서 선정 ☐ 평가 기준 ○ 상태보고서의 지도내용을 필수항목으로 구분하여 적정지도 여부를 평가(필수항목 이외의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다음의 사항 확인 시 1개소당 1단계 하향 평가 (현장평가 확인사항) ① 제도이행 지도 수행 내용이 허위인 경우 ② 제도이행 지도 수행 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 유해인자에 제도 이행 기술지도가 누락(예: 작업환경측정 또는 특수건강진단 누락)되거나,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평가 산식 $\text{이행율(\%)} = \frac{\text{적정건수(합계)}}{\text{총건수*(합계)}} \times 100$ * 선정 사업장 수(5개소) × 필수 항목 수(최대 4건) = 최대 20건(비해당 항목은 산식에서 제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필수항목</th> <th rowspan="2">총건수</th> <th colspan="2">적정여부</th> </tr> <tr> <th>적정</th> <th>미흡</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r> <tr> <td>1</td> <td>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기술지도</td> <td></td> <td></td> <td></td> </tr> <tr> <td>2</td> <td>작업환경측정 제도 이행 기술지도</td> <td></td> <td></td> <td></td> </tr> <tr> <td>3</td> <td>건강진단 제도 이행 기술지도</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확인사항 ☐ 위탁사업장 현황, 사업장관리카드, 위험성평가표, 상태보고서(5개소) 등 증빙자료, 위탁 사업장(2개 이상) 기록물 및 현장 확인				구분	필수항목	총건수	적정여부		적정	미흡	합 계					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기술지도				2	작업환경측정 제도 이행 기술지도				3	건강진단 제도 이행 기술지도			
구분	필수항목	총건수	적정여부																											
			적정	미흡																										
합 계																														
1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기술지도																													
2	작업환경측정 제도 이행 기술지도																													
3	건강진단 제도 이행 기술지도																													

B

업무 충실성(600점)

2. 작업환경 관리

④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 (75점/지도사: 10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이행여부가 모두 적절한 경우	☐ 1.0
이행율이 80% 이상인 경우	☐ 0.8
이행율이 60% 이상인 경우	☐ 0.6
이행율이 40% 이상인 경우	☐ 0.4
이행율이 40% 미만인 경우	☐ 0.2

지표정의

위탁사업장의 산업보건 관련 유해인자에 대한 감소대책 이행여부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년도 위탁사업장 중 최소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사업장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평가
 - 유해인자 관리지도(B.2.②) 선정 우선순위 고위험 사업장 선정 및 평가
 -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이행율 평가),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후 환산점수 부여
- 기관의 위탁사업장 중 방문 사업장(2개소 이상)을 공단에서 선정

☐ 평가 기준

- B.2.②(필수항목 10개) 및 B.2.③(필수항목 4개)에 대한 이행여부 평가
- 감소대책의 개선기한(단·중·장기적) 미준수 및 이행 관련 관리부실
 - ※ 6개월 이상의 개선기한이 필요한 경우 잠정적인 조치 미이행시 부적정으로 평가
 - 다음의 사항 확인 시 1개소당 1단계 **하향 평가 (현장평가 확인사항)**
 - ① 부정행위 적발 시 (서류와 현장확인 결과가 불일치 한 경우 등)
 - ② 감소대책 이행 후 위험성 감소 여부 미확인
 - ③ 공학적 또는 기술적 감소대책 이행이 가능함에도 관리적 대책으로만 지도
 - ※ 감소대책 이행 후에도 허용 가능한 수준 이상의 위험성으로 판단 시 부적정으로 평가(단, 재개선을 실시한 경우 제외)
 - ※ D.1.①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조치를 의뢰한 사업장은 감소대책 이행 확인 부적정에서 제외

◎ 적정 이행 판단 기준 : 공정(장소) * 위험요소 * 개선대책 등 3개 요소가 포함된 기술지도 내용으로 사업장에서 개선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 내용 평가

적정 예시) : 00공정에 00작업 시 취급하는 관리대상물질 노출로 인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포위식 국소배기장치 설치(제어풍속 0.4m/s 이상)

부적정 예시) : 관리대상물질 취급장소에 건강보호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

☐ 평가 산식

$$\text{적정율(\%)} = \frac{\text{적정 이행건수(합계)}}{\text{지도건수*(합계)}} \times 100$$

* 선정 사업장 수(5개소) × 필수 항목 수(최대 10건) = 최대 50건(비해당 항목은 산식에서 제외)

구분	필수항목	지도건수	적정 이행건수
	합 계		
1	유해인자 관리 지도(B.2.② 10개 항목)		

확인사항

☐ 위탁사업장 현황, 사업장관리카드, 위험성평가표, 상태보고서(5개소) 등 증빙자료, 위탁사업장(2개 이상) 기록물 및 현장 확인

B

업무 충실성(600점)

3. 근로자 건강보호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가 모두 적절한 경우	☐ 1.0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 적정율이 80% 이상인 경우	☐ 0.8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 적정율이 60% 이상인 경우	☐ 0.6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 적정율이 40% 이상인 경우	☐ 0.4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 적정율이 40% 미만인 경우	☐ 0.2

지표정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활동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의 적정성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 사업장 및 유해요인 조사 현황에 대한 DB 제시
- 평가자는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보유사업장 우선 선정하되, 선정이 어려울 경우 근골격계질환 고위험업종* 중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사업장관리카드 및 상태보고서 평가
-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여부, 수시 또는 정기 유해요인조사 지도,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무리한 힘·부자연스런자세·반복동작의 감소방법 제시 등 "지도의 적정성"과 "재확인 지도의 적정성"을 평가
- 평가대상기간 내 기술지도한 실적 기준으로 평가(건강진단 시기, 산업재해 발생 시기 상관없음)
예) '27년 평가 시('26년 1년간 실적 평가) '25년도 하반기 검진결과를 활용하여 '26년도 상반기에 사후 지도 실시한 것도 인정
- ※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후 환산점수 부여

□ 평가 산식

$$\text{적정율(\%)} = \frac{\text{적정 사업장수}}{\text{선정 사업장수}} \times 100$$

□ 평가 기준

- "지도의 적정성"과 "재확인 지도의 적정성"이 모두 "양호"한 경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
- 지도의 적정성 :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여부, 수시 또는 정기 유해요인조사 지도 및 실시여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바른자세, 스트레칭, 체조, 반복동작 감소방법 제시, 중량물 제한, 유해성주지 등 지도내용이 문서로 확인되는 경우 "양호"로 평가
- 재확인 지도의 적정성 : 평가기간 내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 내용에 대해 사업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재지도 하는 경우 "양호"로 평가
- 현장 평가결과(2개소) 근골격계질환 예방지도 수행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

확인사항

-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 사업장 및 유해요인조사 실시 현황에 대한 DB

B

업무 충실성(600점)

3. 근로자 건강보호

②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도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가 모두 적절한 경우	☐ 1.0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 적정율이 80% 이상인 경우	☐ 0.8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 적정율이 60% 이상인 경우	☐ 0.6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 적정율이 40% 이상인 경우	☐ 0.4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 적정율이 40% 미만인 경우	☐ 0.2

지표정의

근로자의 정신건강증진과 업무상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사업장(군)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의 적정성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 현황에 대한 DB 제시
-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질병 발생 사업장, 감정노동 종사 직종 및 보유 사업장(콜센터 상담원 및 유통업 판매업무, 운수업 운전자, 병원 간호사, 요양보호사, 보육시설 유치원·보육교사 등)을 우선 선정 하고,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을 포함한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사업장 중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상태보고서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 관련 기록물 확인
- 감정노동평가(직장내 괴롭힘 포함),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작업전환, 휴식시간 배분, 상담치료, 건강증진프로그램 시행 등 지도내용의 적정성 확인
- ※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후 환산점수 부여

□ 평가 산식

$$\text{적정율(\%)} = \frac{\text{적정 사업장수}}{\text{선정 사업장수}} \times 100$$

□ 평가 기준

-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의 적정성 : 직무스트레스 위험요인 고위험군 파악*, 위험요인 고위험군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개선지도** 내용이 적절한 경우 "적정"으로 평가
- *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KOSS), 사회심리적지수(PWI), 감정노동평가지수 등 평가도구 활용 여부
- ** 기관 연간계획서를 통해 직무스트레스 관리 사업장으로 대상 선정하여 기준에 관한 규칙 669조에 따른 예방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
- 현장 평가결과(2개소) 직무스트레스 예방지도 수행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

확인사항

-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 현황 DB

B

업무 충실성(600점)

3. 근로자 건강보호

③ 뇌심혈관질환 예방 지도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가 모두 적정한 경우	☐ 1.0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 적정율이 80% 이상 적정한 경우	☐ 0.8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 적정율이 60% 이상 적정한 경우	☐ 0.6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 적정율이 40% 이상 적정한 경우	☐ 0.4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 적정율이 40% 미만 적정한 경우	☐ 0.2

지표정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고위험군 파악 및 사후 지도 등 의사 또는 간호사 직무 중 뇌심혈관질환 예방 지도의 적정성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기관에서는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 당뇨병 D_2 , 또는 D_N 판정자 현황에 대한 DB 제시
- 고혈압, 당뇨병에 의한 유소견자(D_2) 또는 D_N 보유사업장 중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상태 보고서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 관련 기록물 확인
 - (사후지도대상) 고혈압, 당뇨병 기저질환자이거나, D_2 또는 D_N 판정 받은 근로자
 - (평가내용방법) 사후지도대상에 대한 예방지도 실시내용의 적정성 평가
- 평가대상기간 내 기술지도한 실적 기준으로 평가(건강진단 시기, 산업재해 발생 시기 상관없음)
예) '27년 평가 시('26년 1년간 실적 평가) '25년도 하반기 검진결과를 활용하여 '26년도 상반기에 사후 지도 실시한 것도 인정(의사 또는 간호사 방문주기를 고려)
- ※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후 환산점수 부여

□ 평가 산식

$$\text{적정율(\%)} = \frac{\text{사후지도 실시 근로자수}}{\text{사후지도 대상 근로자수 (고위험군*)}} \times 100$$

* 뇌심발병도 평가에 따른 고위험군 이상으로 파악된 근로자 수

□ 평가 기준

- ※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의 적정성 : 뇌심혈관질환 발병 고위험군 파악*, 고위험군에 대해 면담을 통한 사후지도실시 및 확인·재지도 내용이 적정한 경우 "적정"으로 평가
- * 발병위험도 평가에 있어 ① KOSHA-Guide활용, ② 자체 검진센터를 통해 확보한 발병위험도 결과, ③ 기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 중 택1하여 뇌심질환 예방지도를 위한 노력도를 확인
- 현장 평가결과(2개소) 뇌심혈관질환 예방지도 수행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

확인사항

- 뇌심평가 자체기준, 고위험군 명단, 뇌심발병위험도 평가결과 등 관련 증빙자료

3. 근로자 건강보호		④ 건강진단 결과 사후지도(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 적정 실시율 80% 이상 실시한 경우		☐ 1.0	
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 적정 실시율 60% 이상 실시한 경우		☐ 0.8	
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 적정 실시율 40% 이상 실시한 경우		☐ 0.6	
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 적정 실시율 20% 이상 실시한 경우		☐ 0.4	
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 적정 실시율 20% 미만 실시한 경우		☐ 0.2	
지표정의 건강진단결과 체계적인 유소견자, 요관찰자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직무 중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사후지도 실시여부를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 실시현황에 대한 DB제시 ○ 평가자는 관리사업장 중 건강진단 결과 질병 유소견자(D), 직업병 요관찰자(C1) 발생 사업장 5개소 이상 무작위 선정하여 상태보고서 및 건강상담카드 등 평가 (건강진단 후 또는 질병 진단 후 업무적합성평가 결과, '다', '라'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포함된 사업장 우선 선정) - (사후지도대상) 수탁사업장의 건강진단결과 질병 유소견자(D₁, D₂, D_N) 및 직업병 요관찰자(C₁) - (사후지도내용) 작업배치, 작업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 상담 및 요양지도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적정 실시 여부 평가(의사 또는 간호사 방문주기 고려) ○ 평가대상기간 내 기술지도한 실적 기준으로 평가(건강진단 시기, 산업재해 발생 시기 상관없음) 예) '27년 평가 시('26년 1년간 실적 평가) '25년도 하반기 검진결과를 활용하여 '26년도 상반기에 사후지도 실시한 것도 인정 ※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 대상이 전혀 없는 경우 결측 후 환산점수 부여 ☐ 평가 산식 $\text{적정실시율(\%)} = \frac{\text{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 적정 실시 근로자수}^*}{\text{사후지도 대상 근로자수}} \times 100$ * 연간 1회 이상 사후지도를 실시한 근로자수 ☐ 평가 기준 ○ 평가산식에 따라 산출된 실시비율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사후지도 대상 및 실시 근로자수에 대해 파악된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 "최하점" 부여 ○ 현장 평가결과(2개소) 사후지도 실시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			
확인사항 ☐ 건강진단결과 사후지도 실시현황 DB(기관), 공단 통계자료 활용			

B

업무 충실성(600점)

3. 근로자 건강보호		⑤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 (의사)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 적정실시율 80% 이상 실시한 경우		☐	1.0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 적정실시율 60% 이상 실시한 경우		☐	0.8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 적정실시율 40% 이상 실시한 경우		☐	0.6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 적정실시율 20% 이상 실시한 경우		☐	0.4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평가 적정실시율 20% 미만 실시한 경우		☐	0.2
지표정의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 유도(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포함)하기 위해 산업보건의 직무 중 근로자 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실시 여부 및 업무적합성평가 지도·조언 여부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자는 업무상질병자, 업무상질병 유소견자(D1) 발생 사업장 중 5개소 이상, 산업재해로 요양 후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 중 5개소 이상 선정하여 상태보고서 및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업무적합성 평가 기록물 확인 - 평가대상기간 내 업무상질병자 발생, 질병 유소견자(D1)를 우선 대상으로 평가 (단, 대상이 없는 경우 소음성난청, 진폐, 질병 유소견자(DN), 일반질병 유소견자(D2) 대상으로 기관에서 수행한 결과 선정) - 산업재해로 요양 후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출퇴근 재해 포함) ○ 업무상질병 판정자에 대한 질병발생 원인 조사(작업환경, 근무방법 등)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지도 및 실시 여부를 평가 ○ 질병이나 사고로 요양 후 업무복귀 시 의사의 업무적합성 평가 여부 확인 ○ 평가대상기간 내 기술지도한 실적 기준으로 평가(건강진단 시기, 산업재해 발생 시기 상관없음) 예) '27년 평가 시('26년 1년간 실적 평가) '25년도 하반기 검진결과를 활용하여 '26년도 상반기에 사후 지도 실시한 것도 인정(의사의 방문주기를 고려하여 평가) ※ 선정대상이 5개소 미만인 경우 전수 선정하고,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후 환산점수 부여 (대상이 없는 경우, 기관에서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며, 불일치한 경우 최저점 부여) ☐ 평가 산식 $\text{적정실시율(\%)} = \frac{\text{적정 실시 근로자수(건강장해 원인조사 + 업무적합성평가)}}{\text{대상 근로자수(건강장해 원인조사 + 업무적합성평가)}} \times 100$ ☐ 평가 기준 ○ 평가산식에 따라 산출된 실시율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업무적합성 평가지도의 적정성 : KOSHA 가이드(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 기본지침)를 준용하여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 현장 평가결과(2개소) 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실시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			
확인사항 ☐ 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지도 실시현황 DB(기관), 공단 통계자료 활용			

1. 보건관련 프로그램 등		① 보건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 (75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평가기준에 따른 취득 점수		
지표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해당사업장에서 운영하여야 하는 보건관련 프로그램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노력이 반영된 성과를 확인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은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운영 실적 평가 - 기관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5가지 프로그램 시행 실적* 제시 * ①~⑤ 중 해당사업장 대상으로 운영성과가 있는 실적 <법적 보건관련 프로그램>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②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③ 청력보존프로그램, ④ 호흡기보호프로그램, ⑤ 건강증진프로그램(금연, 운동, 절주, 영양, 스트레스 관리) ○ 기관에서 KOSHA-Guide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기술지도 시 확인 ○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 프로그램별 작성 상태가 누락없이 양호한 경우(사업장 현황, 평가서 작성상태 등), 교육·훈련 실시 결과 확인 등(※ 대상이 없는 경우 결측 후 환산점수 부여) ☐ 평가 산식 ○ 적정 사업장 수 × 15점 ☐ 평가 기준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 계획에 따른 시행여부 확인 ②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 제619조 제1항 각 호(1~5호) 및 제2항 각 호(1~6호)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 시행여부 확인 - 제621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시 근로자 입장 및 퇴장 시 인원점검 여부 확인 - 제640조에 따른 긴급 구조훈련을 6개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하였는지 여부 확인 - 제641조 각 호(1~5호)에 대한 작업시작 시 주지 여부 확인 ③~④ 청력보존 프로그램 및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 소음(분진)노출 평가, 소음(분진)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호흡용)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분진)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건강진단, 기록·관리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호흡기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 계획에 따른 시행여부 확인 ⑤ 건강증진프로그램 -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KOSHA-GUIDE_H-162-2023)을 활용하여 P-D-C-A 기반으로 프로그램 주제별 「건강증진 활동 추진 계획 수립」, 「추진 활동 평가 및 환류」 여부 확인 ○ ①~⑤ 프로그램 작성 및 이행관리, 프로그램 자체 평가 및 환류 등 기술지도 결과 연계성 및 실행여부 평가 ○ 현장 평가결과(2개소) 수행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1개소당 두단계 하향	
확인사항		
☐ 사업장별 프로그램 시행 실적		

1. 보건관련 프로그램 등

② 작업환경개선 실적 (75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평가기준에 따른 취득 점수

지표정의

기관에서 위탁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해요인 제거 또는 완화로 제시한 대책 등을 사업장에서 적정 실행하였는지 여부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은 5개 사업장에 대해서 개선 실적 평가
- 기관에서 제시하는 작업환경개선 사례를 검토하여 판단기준에 따라 인정여부 판단
- * (先)기관의 기술지도에 의해 (後)사업장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한 ①객관적인 증빙자료 확인(구매내역서, 계산서, 작업환경 측정결과표 등) 또는 ②객관적인 측정값(유량, 조도 등)을 포함한 개선 전후 사진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

□ 평가 산식

평가기준	최대점	평가결과
계	75점	
유해요인을 제거한 작업환경개선 실적(사업장수×15점/개소)	75점	
유해요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작업환경개선 실적 (사업장수×5점/개소) ※ 재정지원 사업(안전동행지원사업, 건강일터조성지원)을 통한 실적 포함	25점	

□ 평가 기준

- (유해요인을 제거한 작업환경개선 실적 인정기준)
 - 화학적인자(분진 포함)에 대한 자재의 대체, 설비의 밀폐 등 공학적 개선을 실시한 경우 작업환경개선 사업장으로 인정
 - *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밀폐구조의 포위형 설비개선 인정
 - * 소음 등 물리적인자 밀폐조치를 통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소음 수준 80dB(A) 미만 유지
 - ※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을 제거한 실적이 있는 경우
 - 기타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유해요인으로부터 노출을 차단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유해요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작업환경개선 인정기준)
 -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부담을 완화한 실적이 있는 경우(예, 대차 등 중량물 운반 방법 개선)
 - 환기설비(전체환기, 국소배기장치) 개선
 - 기타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유해요인으로부터 노출을 완화한 실적이 있는 경우

확인사항

- 기관에서 제시한 실적 사례 등

2. 만족도		① 위탁사업장 만족도 (50점)	
평가기준		평가결과	
총점 (배점×평가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95점 이상인 경우		☐ 1.0	
만족도 조사결과 90점 이상~95점 미만인 경우		☐ 0.8	
만족도 조사결과 85점 이상~90점 미만인 경우		☐ 0.6	
만족도 조사결과 80점 이상~85점 미만인 경우		☐ 0.4	
만족도 조사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 0.2	
지표정의			
기술지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위탁사업장의 만족도 평가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기관의 평가년도 위탁사업장 현황을 K2B에서 내려받아 평가 ○ 외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만족도 조사 실시하여 결과 점수에 따라 평가			
☐ 평가 기준 ○ 사업장 만족도 조사 인정 기준에 따라 평가 ※ 위탁 실적은 있으나 조사대상 전체 응답이 없는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공단 포함)에 기술지도 업무관련 진정서 등을 통해 발생한 민원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는 최하점(10점) 평가 ※ 만족도 조사대상(제조업, 기타의사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위탁사업장 * 공식(잠정)통계 기준 12월 근로자수 적용			
확인사항			
☐ 외부 리서치 전문업체 설문조사 결과			

D

가·감점(±100점)

1. 가점

① 포상, 기관별 우수사례 및 적정 수수료 등 (+100점)

평가기준	최고점	평가결과
총점 (가점 최대 +100점을 초과할수 없음)		
1) 산업보건 관련 정부·지자체·공단 포상 여부	+20점	
2)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참여도 ○ 안전문화 확산 활동(최대 30점)	(+30점)	
3) 불량사업장 고용노동부 통보	+20점	
4) 적정 수수료 - 전국 평균 대비 기관별 1인 평균 수수료를 90% 이상	+30점	

지표정의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우수사례 발굴·가점 반영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

평가내용

□ 평가 방법

1)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표창장 제출로 평가(최대 20점)

포상 훈격별 점수 기준			
포상 내역	가점	포상수	총점
총 합			
차관급 이상	15점		
차관급 미만	10점		

※ 차관급 이상: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공단 이사장, 국회의원

※ 차관급 미만: 노동부지청장, 공단(교육원장, 인증원장, 연구원장, 본부장, 지사장), 지자체(시,군,구)

※ 기관 또는 수행인력이 두가지 이상 지정받은 경우 중복 인정 불가

2) 산업보건 관련 정책 참여도(최대 30점)

○ 안전문화 확산 활동(최대 30점, 다음 5가지 사례의 득점 합계로 평가)

연번	인정 항목	제한횟수	가점
1	산업보건 및 직업건강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본선진출 또는 우수사례 발표 기관 ※ 직업환경의학회 산업보건학회 직업건강간호학회 등 산업보건분야 민간학회 인정(지정인력 참여)	1	+10
2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포럼·세미나 주제발표 ※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 등과 중복인정 불가	2	+5
3	정부·지자체 등 주관 취약시기(폭염, 동절기 등) 안전보건활동 참여	1	+5
4	산업보건 관련 고용노동부 및 공단 세미나·정책회의 참여	3	+5
5	법정인력(평가대상 1/2이상 근무) 전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산업보건분야 외부전문교육 이수(8hr 이상)	1	+10

※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공문, 사진 등 증빙 제출·확인된 경우만 인정하며 항목별 중복 불인정

3) 불량 사업장 고용노동부 통보 건수(최대 20점)

- 위탁사업장 중 기술지도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사항을 고의로 개선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 통보한 사업장 1개소당 5점 부여

4) 기술지도 수수료 계약율(최대 30점)

- 전국 평균 수수료 계약 금액 대비 해당 기관의 평균 수수료 계약 금액이 90% 이상인 경우 10~30점까지 가점 차등 부여
- 가. 평가 전 기관이 평균 수수료를 K2B 전산에 입력하고 기관별 평균 수수료를 합산하여 전국 평균 수수료를 산출(50인 이상 ~ 300인 미만)
- 나. 기관별 관리하고 있는 위탁사업장 90% 이상에 대해 평균수수료를 산정한 경우에 인정 가능
- 다. 전산 입력한 기관별 평균수수료의 신뢰성은 기관 평가 당일 평가반이 기관에서 5개~10개 사업장을 샘플링하여 확인하고 신뢰성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가점 비부여
- ※ 수수료 입력 기준일은 평가대상 기간으로, 12월 31일 입력 분에 한함

□ 평가 산식

○ 적정 기술지도 수수료 계약율 산식

$$\text{적정 계약율} = \frac{\text{해당 기관 평균 수수료 계약 금액}}{\text{전국 평균 수수료 계약 금액}} \times 100$$

가점 수준 판단 기준

- ① 기관별 제출한 근로자 1인당 평균 수수료 계약금액을 기초로 전국 평균 수수료 산출
- ② 전국 평균 수수료 대비 기관 평균 수수료에 따른 가점 부여

구 분	전국 평균 대비 90% 이상	전체 평균 이상	전체 평균 대비 110% 이상
가 점	10	20	30

D

가 · 감점(± 100점)

2. 감점

① K2B 부적정률 및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100점)

평가기준	최저점	평가결과
1) K2B 부적정 입력률	-100점	
2)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3) 정부지원사업 부실수행 등		

지표정의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위법 사항에 대한 징벌적 불이익을 부여하고 K2B 입력 정확도에 대한 책임 유도를 통한 체계적 기술지도 성과 관리 정착

평가내용

□ 평가 방법

- 1) K2B 입력 현황 기준, 지연·누락 또는 오류가 확인된 상태보고서의 입력 부적정 건수를 산출하여 평가

평가 기준

- ① 입력 부적정 건수
- 기한 내에 상태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상태보고서가 누락되어 제출된 경우
 - 사업장 특정 정보(사업장관리번호 및 개시번호) 누락 또는 오기
- ② 방문 평가 시 위탁사업장 입력 누락이 확인된 경우 "-40점" 부여

가. K2B 입력 부적정률 계산식

$$\text{K2B 입력 부적정률} = \frac{\text{입력 부적정 건수}}{\text{상태보고서 제출 필요 건수}} \times 100$$

※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단일 사유(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입력 부적정 건수"에 미산입

※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나. 부적정률에 따른 감점 수준

K2B 입력 부적정률	감점
K2B 입력 부적정 건이 없는 경우	0점
K2B 입력 부적정률이 1% 미만인 경우	-10점
K2B 입력 부적정률이 1% 이상 ~ 2% 미만인 경우	-20점
K2B 입력 부적정률이 2% 이상 ~ 3% 미만인 경우	-30점
K2B 입력 부적정률이 3% 이상인 경우	-40점

2) 평가대상기간 내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지도·감독 결과, 시정조치·경고 처분 수준 평가

가. 시정조치·경고 처분 건 당 -15점 감점

※ 평가대상 기간 내 업무정지 처분(과징금 부과)을 받은 경우, 총점 산정 후 등급보다 한단계 하향 조정

평가 기준

- 평가대상 기간 내 시정조치·경고처분에 따른 처분 확정일을 기준
- 지부(출장소)를 운영하는 기관은 행정처분 실적 합산하여 평가

3) 부실수행 기관

○ 평가대상기간 내 비용지원 등 정부사업 부실수행 관련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통보된 경우

- 참여제한 등 중대한 경우 건당 -100점
- 취소, 환수 등 경미한 경우 건당 -50점

평가 기준

- 평가대상 기간 내 심사위원회 결과 확정일을 기준
- 지부(출장소 등)를 운영하는 기관은 합산하여 평가

확인사항

☐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 관련 실적 및 기관 제출 실적, K2B 입력 실적을 현장 평가 시 확인 등